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8. 26 선고 2014가단6024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전 문

원고1. A

2. B

3. C

4. D

변론 종결 2015. 7. 8.

판결 선고 2015. 8. 26.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의 각 점을 잇는 선 부분에 축조된 옹벽을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 4, 19, 11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토지 (ㄷ)부분과 (ㄹ)부분의 총 161m² 위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양평군 E(이하 생략함) F 주변의 토지들인 F, G, H, I, J 토지들의 현황은 별지 감정도와 같다.

나. 그 중 F 대지 467㎡와 G 대지 520㎡는 원고들의 공유이다.

다. I 대지 826㎡와 J 대지 826㎡는 피고들의 공유이다(당초 공동피고였던 K, L은 화해권고결정 확정됨).

라. 원래 이 사건 토지들의 적법한 경계는 별지 감정도와 같은데, 피고들은 원고들 소유인 F 토지와 G 토지 위에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의 각 점을 잇는 선 부분에 옹벽을 축조하고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 4, 19, 11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토지 (ㄷ)부분과 (ㄴ)부분의 총 161㎡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위 토지 위에는 수목이 다소 식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양평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축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옹벽을 축조하고, 수목을 식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의 각 점을 잇는 선 부분에 축조된 옹벽을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 4, 19, 11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토지 (ㄷ)부분과 (ㄴ)부분의 총 161㎡ 위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은 1999. 10. 25. J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매수 당시 지적공사 경기도본부 양평군 지사의

측량을 통하여 구획을 하고 매입하고 옹벽을 쌓았다. 피고들은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을 믿고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과정에 어떠한 과실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매입한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공언, 평온하게 선의, 무과실로 10년 넘게 점유하여 온 것이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피고들의 주장을 선택하였다).

나. 판단

위 I 대지와 J 대지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적공부에 의하여 지적, 경계가 확정된 대지만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일 뿐이고, 지적도상 위 I, J 필지에서 제외된 원고 대지 침범부분에 대한 소유권까지를 표상하는 등기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침범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유영현

별지